

행 정 자 치 부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경쟁입찰대상인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화성시

내 용

1. 경쟁입찰대상인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란 당해계약의 목적·성질상 특정인이 아니고는 수행할 수 없는 기술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요청 시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제25조제4호의 단서 조항인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경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심의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 경쟁 입찰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련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경쟁 입찰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2013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경쟁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 총 10건에 대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가 유사용역 실적 많거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일반적인 이유만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및 회의록 미 작성 등 운영 부적절

위 관서에서는 2013년부터 2016. 5월 현재까지 [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표]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운영현황 (단위 : 회)

심의회 개최	심의 방법		회의록 작성	비고
	집합(소집)	서면		
36	7	29	0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내지 10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규모²⁴⁾ 이상의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계약사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

24)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심의회 개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성격, 심의 방법,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심의위원들이 직접 출석하여 심의함을 전제로 하는 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해서는 아니 되며,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운영할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08. 1. 7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3부터 2016. 5월 현재까지 [표]와 같이 총 36회의 계약심의회를 개최하면서 29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으로써 계약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록 작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시정]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 내용이 명확히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